
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을호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93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2. 20.

발 의 자 : 정을호 · 서삼석 · 이연희
박정현 · 조정식 · 김남근
민병덕 · 안호영 · 강준현
박홍배 · 박민규 · 김남희
정준호 · 이개호 · 고민정
김원이 · 최혁진 · 김영진
김문수 · 오세희 의원
(2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대학평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하여 해당 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 · 직원 · 조교 및 재학생, 동문 등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면서도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기준이 포괄적이고 모호한 측면이 있어 대학교육기관의 장이나 이사장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우려가 있고, 이로 인해 심의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위축될 수 있음.

이에 대학평의위원회 위원 구성 요건 중 학교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대학평

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고 그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(안 제19조의2제2항).

법률 제 호
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의2제2항 전단 중 “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”을 “학생이 추천한 동문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9조의2(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등) ① (생 략)	제19조의2(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대학평의원회는 11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, 교원, 직원, 조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, <u>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</u> 을 포함할 수 있다. 이 경우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(定數)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 <u>학생이 추천한 동문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③ ~ ⑦ (생 략)	③ ~ ⑦ (현행과 같음)